

노무관련 상담사례 ⑧

자료제공 / 노동부

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Q 산전·후 휴가 기간중에 지급되는 급여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주가 평소급여의 50%만을 지급하겠다고 통보해 온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가 지급하는 금액만을 산전·후 휴가중의 급여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

A 근로기준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간의 보호휴가를 주되, 이경우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며 산전·후 휴가중 최초 60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당해근로자의 통상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이 규정은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동의하에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강행규정이므로 사업주는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하고, 만약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에 의해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의미한다.
- 산전·후 휴가기간중 최초 60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지급하고, 60일을 초과하는 30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함 (단, 우선지원대상 사업장은 산전후휴가기간 90일분 통상임금을 고용보험에서 지급함)

생리휴가를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Q 생리휴가를 월차휴가와 같이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A 생리휴가는 여성근로자에 대해, 생리사실이 있는 날중 월 1일의 근로의무를 면제시켜주는 것으로서, 휴가의 성격상 여러 달의 생리휴가를 적치하였다가 사용할 수 없다.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 어떠한 경우가 남녀차별에 해당하는지

Q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 어떠한 경우가 남녀차별에 해당하는지

A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 남녀차별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는 차별에 해당한다

- ① 특정성(여성 또는 남성)에게는 전적으로 모집·채용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는 경우
- ② 직종별로 남녀를 분리 모집하거나 성별로 채용 예정 인원을 배정함으로써 특정직종에 특정성의 채용기회를 제한하는 경우
- ③ 특정성에 대하여만 배우자나 보호자의 취업동의서 또는 보증 등을 요구하는 경우
- ④ 모집·채용에 있어 남성 또는 여성만을 가리키는 직종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단, 여자 또는 남자를 배제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한 경우는 제외)
- ⑤ 학력·경력 등 자격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성을 다른성보다 낮은 계급 또는 직위에 모집·채용하는 경우
- ⑥ 남녀가 동일자격임에도 특정성을 분리한 고용형태로 채용하는 경우(예, 여성만을 비정규직으로 채용)
- ⑦ 특정성의 채용기회를 제한할 목적으로 직무 수행상 반드시 필요하지 아니한 채용조건을 부과한 경우
- ⑧ 면접·구술시험의 경우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성을 불리하게 대우함으로써 특정성의 채용기회를 제한하는 경우
- ⑨ 기타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0일 미만 육아휴직 사용시 육아휴직 급여 지급 여부

Q 30일 미만 육아휴직 사용시 육아휴직급여 지급 여부

A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의하여 육아휴직급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중에서 일 정요건을 갖춘 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30일 미만의 육아휴직을 실시한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한다.

- 일정한 요건 :

1. 육아휴직개시일 이전에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고 있을 것
3. 육아휴직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12월 이내에 신청 할 것

- 다만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허용하면 육아휴직은 가능함. 그러나 이 경우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하는 육아 휴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음



널리 알려진 말의 유래

늙은 여자는 없다

‘늙은 여자는 없다’는 말은 여성을 존중하고 찬미하는 프랑스 사회에서 쓰이는 말로, ‘여자에게는 나이가 없다’, ‘여자는 언제나 젊다’라는 뜻으로 쓰인다. 이 말은 16세기 사상가 몽테뉴가 한 말이다.

19세기 후반의 역사가 미술레도 <연애론> 제5부 제4장에서 ‘늙은 여자는 없다’라는 표제 아래 ‘만약 여자가 남을 사랑하고 선량한 마음을 가진다면 어떠한 연령에 있어

서도 남자에게 무한한 한 순간을 준다’라고 밝히고 있다.

시인 알폰스 칼은 <여인>이란 글에서 ‘여자는 나이가 많아서 혹은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죽지 않는다. 그리고 늙은 여자란 없다. 마음속에서 여자는 항상 젊다. 여자는 언제나 동일한 취미와 쾌락, 사랑을 지니고 있다’라고 했다.

「말랑말랑한 절대상식」 중에서